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50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4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시장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으로 실질적인 균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
-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별회계의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 제3호)
- 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함 (안 제9조 제4항)
-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12조 제1항)
- 라.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안 제13조)
- 마.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 ⑩ (생략)</p> <p>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한 차례만 ----- ----- -----.</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p>